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 금지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37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0553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건설사업자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를 통한 근로자 고용 금지 (안 제41조의2, 안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2

I.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0553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3.

다. 회 부 일 : 2024. 11.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3. 검토의견

가. 건설사업자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를 통한 근로자 고용 금지 (안 제41조의2, 안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u>제41조의2(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금지) 건설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98조의2(과태료)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자</u> 2.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47조¹⁾는 근로자에 대한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근로자의 구직경로에 관한 조사를 살펴 보면, 대부분의 근로자 채용이 팀·반장의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팀·반장이 현장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고용 알선을 통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불법적인 ‘채용팀장형 하도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²⁾.

1)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⑥ (생략)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등

2)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에 대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우나 건설현장에서 다수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2021~2023년)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54건(2021: 11건, 2022: 22건, 2023 21건)의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그 중 건설근로자 관련 현황 확인은 어렵다는 설명임.

【 특성별 구직경로 Ⅰ : 건설근로자 응답 】

(단위 : %)

구 분		팀·반장의 인맥을 통해	유로 직업소개소 (용역센터)를 통해	공공 무료 직업소개소를 통해(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자체 등)	민간 무료 직업소개소를 통해(노조의 취업지원센터, 민간취업지원 센터 등)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
전 체		84.2	5.5	4.8	3.5	2.0
성별	남성	84.6	5.3	4.8	3.4	1.8
	여성	78.9	8.5	4.2	4.2	4.2
연령대	20대 이하	77.9	3.5	11.5	4.4	2.7
	30대	79.8	6.6	4.9	6.0	2.7
	40대	87.1	4.1	4.4	2.5	1.9
	50대	84.4	7.6	3.6	3.0	1.3
	60대 이상	90.6	3.5	1.2	2.4	2.4
직종	건축목공	87.8	0.0	4.1	4.1	4.1
	기계설비공	82.6	2.2	6.5	6.5	2.2
	내선전공	83.1	5.1	5.1	6.8	0.0
	내장공	87.2	2.1	6.4	2.1	2.1
	도장공	85.4	2.1	8.3	4.2	0.0
	미장공	84.6	7.7	3.8	3.8	0.0
	방수공	88.0	6.0	4.0	0.0	2.0
	배관공	87.9	3.4	3.4	3.4	1.7
	비계공	87.3	1.8	5.5	3.6	1.8
	석공	93.5	0.0	6.5	0.0	0.0
	용접공	89.8	4.1	2.0	4.1	0.0
	조적공	93.0	4.7	0.0	2.3	0.0
	철근공	87.2	2.1	6.4	2.1	2.1
	타일공	90.0	6.0	2.0	2.0	0.0
	통신설비공	81.6	2.0	10.2	0.0	6.1
	플랜트공	92.3	3.8	0.0	1.9	1.9
	형틀목공	84.8	6.5	2.2	6.5	0.0
	보통인부	47.2	34.0	5.7	7.5	5.7
	조력공	78.3	6.5	4.3	2.2	8.7
	기타	76.8	7.1	8.9	5.4	1.8
숙련 수준	반장 또는 팀장	89.3	3.1	3.1	4.1	0.5
	기능공	92.2	1.9	3.4	2.2	0.3
	준기공	87.8	4.6	4.1	2.0	1.5
	조공(일반공)	69.4	11.8	8.0	5.6	5.2
자격증 유무	없다	84.0	6.1	4.4	3.2	2.3
	있다	85.2	2.5	6.8	4.9	0.6
총 경력	5년 미만	78.1	7.6	6.8	4.8	2.8
	5~10년 미만	83.9	6.4	5.0	2.8	1.8
	10~20년 미만	90.1	3.3	2.8	1.9	1.9
	20~30년 미만	90.0	1.8	3.6	3.6	0.9
	30년 이상	93.8	3.1	0.0	3.1	0.0

주 : 다중응답(2개 선택) 결과임.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2021

개정안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에게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건설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직업안정법」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설현장에서의 채용팀장형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 활용을 금지함으로써, 불법적인 고용 행태를 차단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행태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내용을 「직업안정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①현행법 체계에

서는 건설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업등록 유무 및 명의 대
여 등의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의 무등록 여부를 건설사업자가 확인할 수 없고, ②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험 가입 등 근로계약 조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③제조업, 서비스업 등 타 산업 영역에서는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더라도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
정이 없음에도 건설사업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등
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